

출입국관리법

[시행 2009. 6.20] [법을 제9140 호, 2008.12.19, 일부개정]

제3 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1 절 외국인의 입국

제7 조 (외국인의 입국) ①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05.3.24>

②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다. <개정 1993.12.10, 2005.3.24>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자
3.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자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하여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③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 또는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 항제2 호의 자에 대하여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④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나 법무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의 국민은 제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한 외국인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입국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⑤삭제 <2005.3.24>

제7 조의2 (허위초청 등의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호의 1 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허위의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1.12.29]

제8 조 (사증) ①제7 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은 1 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과 2 회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으로 구분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 조 (사증발급인정서) ①법무부장관은 제7 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을 발급함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②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은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대리할 수 있다. <신설 2002.12.5>

③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대상·발급기준 및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0 조 (체류자격) ①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개정 1996.12.12>

② 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12>

제 11 조 (입국의 금지등)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5.3.24>

1. 전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자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5. 사리분별 능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자가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구호를 요하는 자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1910 년 8 월 29 일부터 1945 년 8 월 15 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자
 8. 기타 제 1 호 내지 제 7 호의 1 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②법무부장관은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본국이 제 1 항 각호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제 12 조 (입국심사) ①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 6 조제 1 항 단서의 규정은 제 1 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한다. <개정 2005.3.24>

1.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할 것
3.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4.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 3 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⑤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 7 조제 2 항제 2 호 또는 제 3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체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⑥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출입할 수 있다.

⑦제 5 조제 2 항의 규정은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12>

제 12 조의 2 (선박등의 제공금지) ①누구든지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 또는 출국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다른 국가에 불법으로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등이나 여권 또는 사증·탑승권 그 밖에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24>

②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안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5>

[본조신설 1997.12.13]

제 12 조의 3 (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 ①제 5 조제 2 항의 규정은 외국인의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선

원신분증명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3.24>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 법을 위반하여 조사중인 자로서 제46 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하는 출입국사범의 여권·선원신분증명서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본조신설 2001.12.29]

제 13 조 (조건부입국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제 12 조제3 항제1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일정 기간내에 그 요건을 갖추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제 11 조제1 항 각호의 1 에 해당된다고 의심되거나 제 12 조제3 항제2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의심되어 특별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조건부입국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허가서에는 주거의 제한,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 천만원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그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그 예치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 ④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절 외국인의 상륙

제 14 조 (승무원의 상륙허가)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나 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15 일의 범위 안에서 승무원상륙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 11 조제1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선 중인 선박등이 대한민국내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고자 하는 외국인승무원
 2. 대한민국내 출입국항에 입항예정이거나 정박 중인 선박등에 옮겨 타고자 하는 외국인승무원
-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 1 항제1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이 선원인 경우에는 선원신분증명서
 2. 제 1 항제2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이 선원인 경우에는 여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다만, 제 7 조제2 항제3 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여권
 3. 그 밖의 외국인승무원의 경우에는 여권
-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승무원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무원상륙허가서에는 상륙허가의 기간, 행동지역의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제 3 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 1 항제2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에 대한 승무원상륙허가에 관하여는 제 12 조제5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승무원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륙허가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승무원상륙허가서는 그 선박 등이 최종 출항할 때까지 국내의 다른 출입국항에서도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3.24]

제 15 조 (긴급상륙허가)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이 질병 기타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30 일의 범위내에서 긴급상륙의 허가를 할 수 있다.

②제 14 조제 3 항 및 제 5 항의 규정은 제 1 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무원상륙허가서"는 "긴급상륙허가서"로, "승무원상륙허가"는 "긴급상륙허가"로 본다. <개정 2005.3.24>

③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긴급상륙한 자의 생활비·치료비·장례비 기타 상륙중에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16 조 (재난상륙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난한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선박등의 장, 운수업자, 수난구호법에 의한 구호업무집행자 또는 그 외국인을 구조한 선박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30 일의 범위내에서 재난상륙의 허가를 할 수 있다.

②제 14 조제 3 항 및 제 5 항의 규정은 제 1 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무원상륙허가서"는 "재난상륙허가서"로, "승무원상륙허가"는 "재난상륙허가"로 본다. <개정 2005.3.24>

③제 15 조제 3 항의 규정은 재난상륙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긴급상륙"은 "재난상륙"으로 본다. <신설 1996.12.12>

제 16 조의 2 (난민임시상륙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협약 제 1 조 A(2)에 규정된 이유 기타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으로부터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90 일의 범위내에서 난민임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②제 14 조제 3 항 및 제 5 항의 규정은 제 1 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무원상륙허가서"는 "난민임시상륙허가서"로, "승무원상륙허가"는 "난민임시상륙허가"로 본다. <개정 2005.3.24>

[본조신설 1993.12.10]